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경호처 설치〉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50호)

2025. 2.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3
나. 현행 국회의 경비·경호 체계	6
다. 해외 의회의 경비 체계	10
라. 소결	13
2. 내용별 검토	18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18
나. 국회경호처의 구성(안 제3조, 제6조 및 제7조)	20
다. 국회경호처의 직무(안 제4조, 제5조 및 제15조)	24
라. 경호처 인사 관련 규정(안 제8조 등)	27
마. 소속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안 제9조 및 제18조)	36
바. 경호업무 수행에 따른 직원 상이·사망 보상(안 제13조)	38
사. 국회경호안전대책위원회(안 제16조)	40
아.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안 제17조)	42
자. 경호공무원의 무장(안 제19조)	45
차.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안 제20조)	49
카. 벌칙(안 제21조)	52
타. 부칙	5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학영 · 이정문 · 한민수 · 강득구 · 정준호 · 문금주
임호선 · 전재수 · 문정복 · 김재원 · 김현정 · 김영배
한정애 · 윤호중 의원(14인)

2. 제 안 일 : 2024. 12. 5.

3. 회 부 일 : 2024. 12. 6.

※ 의안번호 : 625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무장 세력의 국회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경비와 보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도리어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및 입법부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되는 현 국회 경비 체계의 문제로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데 심대한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입법부의 특수성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의 독립적인 운영

을 위한 국회경호처를 신설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투표와 선거
를 통해 확립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를 폐쇄하여 국회의원 및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고 계엄군 출입을 허용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는 계엄 시 정부와 법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고, 계엄해제요구권을 보유한 국회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한 「대한민국헌법」 및 「계엄법」¹⁾에 반하는 것임.

동 사태가 발생했던 원인으로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으로서 이들에 대한 최종 지휘권이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에게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²⁾

이에 제정안은 입법부의 지위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경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회경호처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칙 총 21개조 및 부칙 총 1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제정안은 국회 및 국회의장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

1)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2)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폐쇄 시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체계는 경찰청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 순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에 대한 보고나 봉쇄 해제 지시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직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법률의 목적으로 함.

둘째, 국회경호처의 경호대상을 국회의장과 그 가족, 국회의장 권한 대행과 그 배우자 등으로 하고, 경호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셋째, 국회경호처에 처장 1인, 차장 1인을 두고 직원은 1~9급까지 특정직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며, 각 계급의 직무와 명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국회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별사법경찰권 및 무장 사용 등이 가능함.

넷째, 국회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 등 인사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국회경호처 소속 공무원이 경호 업무 수행 등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섯째, 경호업무 수행 시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경호처에 국회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여섯째, 국회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표-1] 제정안의 조문 체계

본 칙 (21개 조문)	
제1조(목적)	제12조(징계)
제2조(정의)	제13조(보상)
제3조(국회경호처장 등)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제4조(경호대상)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제16조(국회경호안전대책위원회)
제6조(직원)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제7조(임용권자)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제9조(비밀의 엄수)	제20조(손실보상)
제10조(직권면직)	제21조(벌칙)
제11조(정년)	
부 칙 (1개 조문)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현행 국회의 경비·경호 체계

1) 법적 근거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경찰권(内部警察權)³⁾과 의원가택권(議院家宅權)⁴⁾을 보유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등의 형식으로 발현됨.⁵⁾ 다만, 제정안의 발의 목적과 관련된 것은 국회의 경호·경비 제도이므로, 아래에서는 경호권과 의원가택권을 중심으로 설명함.

경호권은 「국회법」 제143조 및 제144조⁶⁾에 근거하여 회기 중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경찰권으로, 이를 위해 국회에 경위(경호기획관실 소속 일반직 국회공무원)를 두고 필요 시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음.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파견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함.

한편,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원가택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청사관리에 따른 부수적 권리로서 경호권과 달리 폐회 중에도 행사할 수 있음. 경호권과 달리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의

3)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방청인 등 원내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실력으로써 직접 강제하는 권한

4) 회기에 관계없이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국회 내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 내 들어오는 모든 자를 국회의 질서에 따르게 할 수 있는 권한

5)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6) 「국회법」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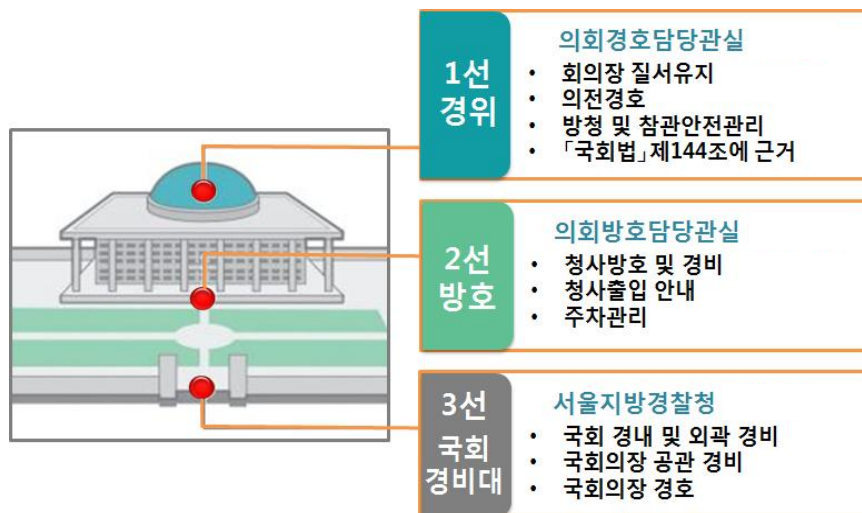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원가택권 행사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 없이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⁷⁾

2) 현행 국회 경비·경호체계⁸⁾

현재 국회 경비체계는 3선으로 운영되고 있음. 1선인 원내 회의장 질서유지 및 의전 경호, 방청 및 참관 안전관리 업무는 국회 경위가, 2선인 국회 경내 주요 건물에 대한 방호 및 경비, 청사출입 안내, 주차관리 업무는 국회 방호가, 3선인 국회의사당 경내 및 외곽경비, 출입문 경비, 국회의장 수행 경호 및 공관 경비, 국회 방문 주요 인사 경호 및 대테러 예방 및 안전 업무는 국회경비대(서울특별시경찰청)가 수행함.

[그림-1] 현행 국회 경비체계



자료: 국회사무처

7)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8) 전진영, 「국회 경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논점』 제230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이상훈, 「국회 경호·경비제도 개선 방안 고찰」, NARS 간담회 발제문, 2024., 국회사무처 제출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함.

국회 경위와 방호는 「국회법」 9) 및 「국회사무처 직제」 10) 등에 근거한 조직으로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반직 국회공무원(경위직·방호직)과 공무직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음.

반면에, 국회경비대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에 근거한 경찰공무원 조직으로 행정응원의 형식으로 국회에 배치되고 있으며,¹²⁾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의 지휘를 받으나 주요 사항은 국회와 협의하여 수행 중임. 참고로, 1951.

3. 22. 최초로 국회경비대가 창설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장 산하에서 운영된 적은 없었으며, 2025. 2. 기준 국회경비대 현원은 123 명임.

9) 「국회법」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10) 「국회사무처 직제」 제5조의2(경호기획관) ② 경호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1. 국회의 경호 및 방호
2. 국회의 방청
3. 국회의사당 참관의 지원 및 안전검색
4. 출입증의 발급·관리
5. 테러(사이버테러는 제외한다)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② 서울특별시경찰청 (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이라 한다) 공공안전차장 밑에 101경비단·기동단·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김포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

12) 일각에서 국회경비대를 국회 경비를 위해 “과건”된 경찰력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으나, 경찰력의 국회 배치는 「국회법」 또는 「국가공무원법」 상 과건이 아닌 「행정절차법」 상 행정응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표-2] 국회 경호 관련 조직 현황

(2025. 2. 1. 기준)

구분	국회사무처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
조직	의회경호담당관실 소속	의회방호담당관실 소속	대장(총경) 1명, 행정과, 경비제대(4개), 의장경호대
인원	경위직 69명	방호직 124명 공무직 40명	123명
주요 업무	-경호·방호 기본계획 수립 -본회의·위원회 경호 -외곽경비업무 협의·조정 -테러 예방·대응 등	-국회 청사 <u>시설의 방호 및 경비</u> -국회의사당 <u>경내 질서유지</u> -주차 관리 등	-국회 <u>경내 및 외곽 경비</u> -국회의장 경호 및 공관 경비

자료: 국회사무처

현행 국회 경비체계는 국회의장·국회사무총장과 서울경찰청장으로 지휘권자가 나뉘어, 경호·경비의 기본원칙인 경호지휘단일성¹³⁾ 및 경호체계통일성¹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국회는 기습적인 시위나 질서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신속성·긴급성이 요구되고 필요한 경우 지휘자의 빠른 결단과 일사분란한 명령하달, 경호·경비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원화된 지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⁵⁾

13) 성공적인 경호조직에 대한 불가피한 전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호요원은 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지휘는 단 일해야 하고 이를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함. 지휘의 단일성은 경호업무가 신속한 결단과 지휘명령 등과 같은 긴급성을 요한다는 측면에서 요구됨.

14) 구조의 정점으로부터 말단에 이르는 무수한 기준을 통하여 상하계급 간에 일정한 관계가 이루어져 책임과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지위와 역할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함을 뜻함.

15) 박창희,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다. 해외 의회의 경비 체계¹⁶⁾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경비 및 보안 업무는 의회경찰(U. S. Capitao Police: USCP)이 담당하고 있음. 의회경찰은 특별구역 경찰로서 연방의회가 직접 선발하며, 수행 업무는 연방의원과 의회 직원의 안전, 연방의회 지도부와 연방의회를 방문하는 국가원수·고위급 인사의 경호임. 현재 의회경찰은 약 2,000명 규모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외에 운영 및 행정직을 맡고 있는 350명의 일반인이 의회경찰대에 소속되어 있음. 의회경찰은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감시·조사 활동을 할 수 있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등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음.

독일 연방의회는 사무처 산하 보안부서에 의회경찰(Bundespolizei)을 두고 있고, 의회경찰은 연방경찰이나 주(州)경찰의 파견을 받아 운영해 왔으나 2013년부터 연방경찰의 협조 하에 자체적으로 일부 보안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의회경찰은 일반 경찰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의 명시적인 승인 하에서만 체포·수사를 할 수 있음. 2019년 기준 169명(사설 보안담당관 제외) 규모임.

프랑스 국민의회는 의회사무처 산하조직인 보안안전실(Reception, Security and Safety Division), 공화국 수비대¹⁷⁾ 의회 파견대, 소방 파견대, 경찰 등 복수의 조직이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의회 파견대 지휘관은 의장에게 보고의무가 있음. 경찰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방문객의 범죄이력 조회, 의사업무 방해 행위 감독 등의 업무

16) 전진영, 「국회 경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논점』 제230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및 국회사무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작성함.

17) 프랑스 국가 헌병대(Gendarmerie Nationale) 산하 조직으로, 파리에 있는 대통령궁(엘리제궁)과 국회의사당, 총리관저 등 주요 시설의 경호경비를 담당함.

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회의사당 건물 외부 경호는 파리경찰국(내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영국 의회는 2016년 1월 의회경호국(Parliamentary Security Department: PSD)을 창설하였고, 의회 경내의 모든 안전 관련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의회경호국장은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의 직속 지휘를 받으며 의회 사무총장의 관리 하에 있음. 한편, 의회 외곽은 특별임무 협약을 맺고 있는 특수경찰부대인 의회 및 외교 보호사령부(Parliamentary & Diplomatic Protection Command: PaDP)에서 담당하며, 현재 약 500인의 경호직이 근무하고 있음. 이들 경찰 인력은 의회경호국장의 지휘를 받음.

일본은 우리나라 국회와 마찬가지로 경위가 의회 내부 경호·경비를 담당하고 경찰관(동경 경시청 기동대 담당)은 의회 외부 경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의사당 내부의 경찰을 담당할 수도 있음. 경위가 소속된 경무부는 중의원과 참의원 사무처 아래 조직되어 국회 경호업무(원내 경비, 정부 요인 및 외국 국민 경호)를 수행하며, 경무부장은 사무총장과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음.

마지막으로, 캐나다 의회의 경우에는 2014년 의회경호국(Parliamentary Protective Service: PPS)을 창설하여, 의원·의회직원·방문객 보호, 의회 건물과 경내 경비, 의회 출입통제, 외곽경비, 경내 긴급상황 대처 및 의회 기념행사의 안전한 보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의회경호국장은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대 소속이나, 양원 의

장의 지휘를 받음.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해외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의회 경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의장의 지휘·감독 하에 두고 있으나, 국가별로 경호·경비체계의 구성, 외곽경비 업무의 자체 수행여부, 인력 충원 방식 및 업무수행절차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라. 소결

제정안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노출된 국회 경호·경비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부의 독립적인 경호·경비조직인 국회경호처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회의 독자적인 경호·경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현행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관리권 보유, ②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확대 개편, ③ 국회 자체 경호·경비 조직 신설(제정안), ④ 청원경찰 활용, ⑤ 특수경비원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중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효과적인지 검토가 필요함.

제정안은 국회경호처 신설을 통해 국회가 자체적인 경호·경비 조직과 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면이 있음. 반면에, 조직법적 근거 마련 외에 하위법규 정비, 인력 채용, 예산 확보 등 기관 설립에 따른 상당한 후속 조치가 요구되어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¹⁸⁾

18) 만약 경호·경비 조직 신설을 위해 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에는 다른 국회소속기관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정안뿐만 아니라 「국회법」 에도 동 기관의 설치 근거를 대략적으로나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국회사무처에 대한 설립근거는 「국회법」 과 「국회사무처법」 모두 마련되어 있음.

[표-3] 독자적인 국회 경호·경비체계 구축방안 비교

구 분	장점	단점
경찰에 대한 지휘권 보유	최소한의 변화를 통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확립 가능	경찰청 소속 유지로 인해 지난 비상계엄 사태 재발 우려
경호기획관실 확대 개편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 가능	일반직 국가공무원 특성상 물리력 행사를 위한 조직법·작용법적 근거 보완에 한계 존재
경호·경비 조직 신설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 및 국회경호의 독립성 확보 가능	· 조직법·작용법적 근거 필요 · 기관 설립에 따른 하위법규 정비, 인력 채용,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단시간 내 실현 어려움
청원경찰 활용	별도의 입법 불필요 (「청원경찰법」에 따라 가능)	· 청원경찰의 배치, 임용, 운영 등에 있어 경찰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 많은 국가시설에서 청원경찰을 방호직 공무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부합하지 않음
특수경비원 활용	· 별도의 입법 불필요 (「경비업법」에 따라 가능) · 경비절감 가능	· 특수경비원 교육 및 직무수행에 대한 경찰 감독권이 여전히 존재 · 특수경비원의 신분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사기저하 및 높은 이직율로 전문성 저하 우려

자료: 박창희,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5.를 참고하여 작성

참고로, 국회경비체계 개편과 관련한 다수의 제·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¹⁹⁾ 동 제정안과 이들 개정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과 같이 국회경호처를 설립할 경우 기존 경비조직(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9) 2025년 2월 11일 기준 동 제정안 외에 2건의 제정안(「국회경위처법안」,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과 27건의 개정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된 상황이며, 이들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파견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휘권 명시, ② 국회경비대, 국회경찰 등 국회경호조직 근거 마련, ③ 파견 경찰공무원의 국회 경호 근거 삭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제정안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국회법」 제144조²⁰⁾의 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 경호·경비 업무를 국회경호처(인물 경호)와 경위로 비롯되는 경호기획관실(국회 경비)의 이원화된 체계로 수행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 경우 두 기관 간 업무 중복 및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 체계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만약 국회경호처가 경호기획관실의 기존 업무(국회 경비)까지 포섭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업무 이관 및 소속직원의 승계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동일하게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의 경우 경호업무의 상당수가 군·경의 협조하에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경호처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의 발의배경과 취지를 고려할 때 국회경호처는 대통령 경호처와 달리 경찰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국회경호처 소속 공무원이 경호업무 수행 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법적 근거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제정안 제5조제3항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소속공무원

20) 「국회법」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과 관계기관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 근거만 두고 있을 뿐 해당 활동의 발동요건, 수행절차 및 내용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안 제19조는 소속공무원의 무기 사용에 관한 근거를 두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아 권총, 소총 등 무기, 수갑, 경찰봉 등 경찰장구, 분사기 등 경찰장비의 사용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정안에 따라 국회경호처를 신설하여 130명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기관부담금 및 기본경비로 5년간(2026년~2030년) 총 419억 400만원, 연평균 83억 8,1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한편, 국회사무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확인된 국회 경호·경비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 인력, 예산, 경호·경비의 실효성 확보수단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경찰청은 미국과 같이 입법부 소속으로 국회경찰을 선발·구성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국회의장 경호를 전담하는 것이 적절하며, 경찰관 파견의 경우 여전히 인사·예산권 등을 경찰청에서 보유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임.

2. 내용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제정안 제1조 및 제2조는 동 법률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표-4]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 및 국회의장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국회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제정안 제1조 및 제2조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정의 규정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

다만, 안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호의 “경호구역”은 동 어반복적·순환적 정의일 뿐만 아니라 해당 용어가 안 제5조21)에서만

21)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를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정의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이며,

같은 조 제3호에서 정의한 “소속공무원”의 경우 제정안에서 경호처 직원, 직원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고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소속공무원을 퇴직자와 원 소속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 개념으로 달리 약칭하고 있으므로,²²⁾ 체계·자구의 측면에서 유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22)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제6조(직원) ① · ② (생략)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비밀의 업무) 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직원(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2.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기면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한다.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한다.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③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국회경호처의 구성(안 제3조, 제6조 및 제7조)

제정안 제3조 및 제6조는 국회경호처에 처장 1인, 차장 1인과 특정직·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안 제7조는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는 국회의장에 게, 그 밖에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임용권은 처장에게 부여함.

[표-5]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3조(국회경호처장 등) ① 국회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③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처장을 보좌한다. 제6조(직원) ① 경호처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停職)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 ② 처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23)을 준용한다.

23)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에

제정안은 임용권자를 6급 이하 공무원은 처장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은 국회의장으로 하되, 5급 이상 공무원의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停職)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 경호처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임.²⁴⁾

국회경호처에 배치하는 공무원의 종류와 임용권자 등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나, 아래의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됨.

첫째, 국회경호처 역시 국회 소속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처장에게 위임하는 국회의장의 임용권 범위가 타 국회 소속기관과 상이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회 소속기관의 경우 국회의장이 「국가공무원법」, 「국회사무처법」, 「국회도서관법」, 「국회예산정책처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²⁵⁾에 따라 국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되, 「국회인사규칙」²⁶⁾에 따라 3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 4·5급 공무원의

있어서는 임용절차 간소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4) 제정안에서 국회경호처 조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은 직무특성상 기밀·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무분장을 대외에 공개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됨.

25) 「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 ④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법」 제3조(공무원의 임용) ②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법」 제3조(공무원의 임용) ②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공무원의 임용) 예산정책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공무원의 임용) 입법조사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26) 「국회인사규칙」 제5조(임용권의 위임) 법 제32조제4항,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에 따라 국회의장(이하 “議長”이라 한다)은 다음 각

전직·전보·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등의 임용권 일부를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반면, 제정안은 이에 더하여 “3급 이상 공무원의 전보·휴직·겸임·직위해제·정직·복직에 관한 사항”도 국회경호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경호처에 한해 처장에게 국회의장의 임용권을 보다 넓게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6] 제정안에 따른 경호처와 국회소속기관의 임용권자 비교

구 분	국회경호처	국회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장 (처장 제청) * <u>전보, 휴직, 겸임, 파견, 직위해제, 정직, 복직</u> 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사	국회의장 (소속기관장 제청) * 파견, <u>4·5급 공무원 전직·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u>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 ** 신규채용, 승진임용, 파견 및 파견연장 시 국회사무총장 (중앙인사관장기관 ²⁷⁾)과 협의 필요
6급 이하 공무원	처장	소속기관장

호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

2. 4·5급 공무원의 전직·전보·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3. 전문경력관 가군 및 연구관의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4.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5. 소속기관 내의 전보와 겸임

27) 「국가공무원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둘째,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는 규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현재 고위공무원단 제도²⁸⁾는 행정부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국회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맞추어 안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법문언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8) 고위공무원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제125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다. 국회경호처의 직무(안 제4조, 제5조 및 제15조)

제정안 제4조는 국회경호처의 경호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5조는 경호구역 지정 및 경호구역에서의 안전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직무상 필요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표-7]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장과 그 가족 2. 국회의장 당선인과 그 가족 3. 국회의장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4.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회의원 및 국내외 요인 등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조문들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며, 국회 경호처의 원활한 경호활동을 위해 규정한 사항들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의 경호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은 국회의장(당선인 포함)과 그 가족, 국회의장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등 인물을 중심으로 경호대상을 규율하고 있을 뿐, “국회”에 대한 경비 근거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만약 제정취지가 국회경호처가 인물 경호와 장소 경비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국회 경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정안은 경호가 필요한 국회의원 및 국내외 요인 등에 대해서도 경호를 할 수 있도록 경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외 요인의 경우 대통령 경호처와 업무 중복 소지가 있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²⁹⁾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 기관의 경호대상이 중첩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임.³⁰⁾

셋째,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선출되면 그 날부터 의장으로 서 직무를 행하게 되므로 경호대상으로 국회의장(안 제4조제1항제1호)

2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30) 참고로,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 등이 국회에 방문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국회 밖 경호는 대통령경호처가 전담하고 국회 경내에서의 경호는 대통령경호처가 직접 하지 않고 국회의와의 협조를 통해 진행하고 있음.

과 국회의장 당선인(안 제4조제1항제2호)을 구분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어 보이며,

안 제4조제1항제3호는 경호대상으로 국회의장 ‘권한대행’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법」³¹⁾은 ‘직무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체계·자구상 적절해 보임.

31) 「국회법」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에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 경호처 인사 관련 규정(안 제8조 등)

제정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는 경호처 직원의 임용자격, 직권면직 사유, 정년, 징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는 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국회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한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함.

[표-8]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³²⁾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직원(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된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회규칙으로 정

제 정 안

하는 바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제5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기면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정년) 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연령정년

가. 5급 이상: 58세

나. 6급 이하: 55세

2. 계급정년

가. 2급: 4년

나. 3급: 7년

다. 4급: 12년

라. 5급: 16년

② 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제 정 안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 ④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③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8조³³⁾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3)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

제정안은 국회경호처 직원에 관한 인사 규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들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14조제1항은 국회경호처의 신규채용, 시험, 승진, 교육훈련 등을 국회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뿐 수행기관은 예정하고 있지 않은데, 국회경호처와 국회사무처 중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지 논의가 필요함.

국회경호처가 대통령 경호처³⁴⁾와 같이 자체적으로 신규채용, 임용시험, 승진임용, 교육훈련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경우 경호업무의 특수성·기밀성을 고려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 경우 국회 소속기관의 신규채용, 임용시험, 승진임용, 교육훈련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회사무처에서 관장하도록 한 인사관계법령³⁵⁾

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 보고)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3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시험) ②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 및 승진시험으로 구분하여 처장이 실시하며, 경호공무원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승진임용 방법) ②처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5할, 경력평정 1.5할, 교육훈련성적 3할, 상훈 및 신체검사 0.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승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20조의2(승진선발위원회 등) ① 처장은 승진대상자의 추천,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승진후보추천위원회

2. 승진선발위원회

제24조(교육훈련 등) ①처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35) 「국가공무원법」 제34조(시험 실시기관) ③ 국회 및 법원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국회사무처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인재개발)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인재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한다.

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반면에, 현행법령에 근거하여 국회사무처가 국회경호처의 인사 및 교육훈련 업무를 주관하는 경우에는 기존 경위·방호인력이 축적한 업무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경호의 전문성이나 기밀을 요하는 보안성의 관점에서는 취약한 측면이 있음.

상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경호처 직원에 관한 인사 또는 교육훈련 업무를 국회사무처가 아닌 국회경호처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제정안에 그 근거를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8조제2항제2호는 국회경호처 직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직종에 비추어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 경호처 직원³⁶⁾의 경우 결격사유에 복수국적자를 포함하고

「국회인사규칙」 제32조의2(승진심사위원회) 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소속기관의 장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일반직 4급이상에 대한 승진심사를 담당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일반직 5급 이하 및 연구사에 대한 승진심사를 담당한다.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3조(시험실시기관) 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전직시험 및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기 위한 시험은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시험, 소속기관 소속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채용시험 또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은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실시한다.

② 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위탁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교육훈련관장기관)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있지는 않으나 「국가공무원법」 37)에 근거하여 임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경찰공무원³⁸⁾, 군인³⁹⁾ 및 국가정보원 직원⁴⁰⁾의 경우에는 복수국적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임용이 원천 불가함.

따라서 업무에 따라 복수국적자 임용을 제한할 것인지,⁴¹⁾ 아니면 원천적으로 임용을 차단할 것인지는 국회경호처의 직무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10조제1항은 국회경호처 직원의 직권면직 사유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상 직권면직 사유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3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37)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 38)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39)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40)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41) 이 경우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이 「국회인사규칙」 제4조의3에 근거하여 가능함.

「국회인사규칙」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국회의장·부의장 등 국회 중요 인사의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분야

제정안과 「국가공무원법」을 비교하면, 경호처 직원의 직권면직 사유에 ①신체적·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와 ②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부적합한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하는 반면,

「국가공무원법」 상 직권면직 사유인 ❶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❷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관련 명령을 기피하거나 군휴직 중 군무를 이탈한 경우, ❸고위공무원단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표-9] 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상 직권면직 사유 비교

제 정 안	국가공무원법
· 신체적, 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1991. 5. 31. 삭제)
·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할 때	(1991. 5. 31. 삭제)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	· 직위해제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
	·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 병역판정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

제 정 안	국가공무원법
· 해당 직급,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u>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했을 때</u> · 해당 직급,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u>

①과 ②는 각각 휴직 및 직위해제사유와 사실상 중복된다는 점⁴²⁾⁴³⁾을 고려하면 국회경호처 직원에게만 별도의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이며, ❶과 ❷의 직권면직 사유는 다른 국가공무원과 같이 국회경호처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국회경호처에 두는 징계위원회의 명칭, 구성, 징계 절차 및 징계권자 등을 국회 소속기관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특정직공무원(경호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회경호

42)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43) 참고로, 1991. 5. 31. 이와 동일한 이유로 직권면직 사유에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를 삭제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였음.

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징계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행정부의 경우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비롯한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제도를 별도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⁴⁴⁾

이 경우 국회경호처의 경우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파면·해임을 제외한 모든 징계처분은 처장이 집행하게 되므로, 국회 소속기관과 비교할 때 처장이 징계 처분권자로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게 됨.

[표-10] 제정안과 국회인사관계법령상 징계 제도 비교

구 분	제 정 안 (대통령 경호처 동일)	인사관계법령 (국회 소속기관)
징계위원회 명칭	<u>고등징계위원회</u> , 보통징계위원회	<u>중앙징계위원회</u> (5급 이상), 보통징계위원회(6급 이하)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u>4명 이상 6명 이하 위원</u>	중앙: 위원장 1명 포함 <u>7명 위원</u> . 단, 민간위원 4명 이상 보통: 위원장 1명 포함 <u>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u> . 단, 민간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징계절차 및 징계권자	징계위 의결 거쳐 <u>처장</u> 이 집행. 단, <u>5급 이상 직원의 파면·해임</u> 은 고등징계위원회 의결 거쳐 처장 제청으로 <u>국회의장</u> 이 집행	징계위 의결에 따라 <u>국회의장(5급 이상) 또는 소속기관장(6급 이하)</u> 이 집행

44) 「2024 공무원 인사실무」, 인사혁신처, 2024.01.

마. 소속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안 제9조 및 제18조)

제정안 제9조 및 제18조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① 직무상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공표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며, ② 소속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③ 파견된 경찰공무원 역시 이 법에 규정된 임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

[표-11]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9조(비밀의 엄수) 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국회경호처의 직무 특성상 경호대상에 관한 정보는 보안이 요구되고 제정안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고 무기 휴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속공무원의 물리력 등 권한 행사가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의 조치는 적절한 측면이 있음.

또한, 제정안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직무상 의무는 「대

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와 동일한 것으로, 국회경호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 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바. 경호업무 수행에 따른 직원 상이·사망 보상(안 제13조)

제정안 제13조는 국회경호처 직원이 경호업무 수행 등으로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는 것임.

[표-12]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한다.

국회경호처 직원이 직무수행으로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조문은 확인적 규정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한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도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경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⁴⁵⁾을 통해 직무수행 중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

4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보상) ① 법 제13조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하거나 사망한 사람에게 ‘일반공무원’이 아닌 ‘군인’이나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만약 제정안이 국회경호처 직원도 대통령 경호처 직원과 동일 수준으로 보상하려는 취지라면 지원 강화를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다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른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직원의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또는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몰군경(戰歿軍警), 순직군경(殉職軍警)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는 처장이 발급한 상이확인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국회경호안전대책위원회(안 제16조)

제정안 제16조는 경호업무 수행 시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경호처에 국회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표-13]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6조(국회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국회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회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2. 국회 경호와 관련된 첩보·정보의 교환 및 분석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국회경호처에 국회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국회경호처의 직무 특성상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경호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국회경호처의 업무를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규율한 것과 달리 안 제16조는 국회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관장사항을 ‘국회’로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경호처와 동 위원회 간 업무체계상 체계정합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아.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안 제17조)

제정안 제17조는 경호업무 수행 중 경호공무원의 소관에 속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직무상·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경호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⁴⁶⁾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표-14]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정안은 국회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소관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의장 등 주요요인에 대한 테러·범죄 가능성 및 국회 내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특별사법경

46)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와 협력하여 수사하거나 수사를 보조하는 자로서, 경찰청·해양경찰청·검찰청에 소속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삼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 등 특수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분됨. 특별사법경찰은 ① 특수한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소관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1956년에 도입되었음.

찰관리는 긴급체포, 압수·수색·검증, 강제처분 등이 가능⁴⁷⁾하여 범죄 예방과 불법행위자에 대한 실질적인 질서유지가 가능한 점⁴⁸⁾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경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경호처와 유사하게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우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7조⁴⁹⁾에서 소속 경호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사의 충실성을 담

4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48) 박창희,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4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보하기 위하여 경호공무원의 수사전문성 및 수사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⁰⁾

5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자. 경호공무원의 무장(안 제19조)

제정안 제19조는 직무상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①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② 경호업무 수행 중 소관 범죄로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항거·도피하려 하거나, ③ 야간,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 업무를 방해할 경우 이를 방지·체포하기 위해 무기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람에게서 위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함.

[표-15]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서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⁵¹⁾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제 정 안

이유가 있을 때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정안은 소속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중범죄인이 직무집행에 대해 항거·도피 시 이를 방지·체포하기 위해 무기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때 등 일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회경호처의 직무 특성상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리적 행사가 수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이 무기⁵²⁾를 최소 침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이라 볼 수 있음.

51)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狀)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52) 제정안은 “무기”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 등을 뜻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20조(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⑤법 제1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한다.

참고로, 대통령 경호처 직원, 경찰, 군사경찰 등 유사 직종의 경우 법률로써 무기의 휴대·사용을 제한된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음.⁵³⁾

53)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흥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20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기의 사용) ①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군사경찰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흥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군사경찰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② 군사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때 무기 사용을 야기한 자와 관계없는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

다만, 제정안은 무기 휴대·사용이 비례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 사용에 따른 공권력 남용 혹은 과잉대응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실제로 무기를 사용하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무기 사용과 관련된 관리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 등도 전제되어야 함.

며, 주위의 정황상 무기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 없이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그 상급부대의 지휘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⑧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1.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投棄) 또는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차.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안 제20조)

제정안 제20조는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표-16]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20조(손실보상) ① 처장은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국회규칙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국회경호처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회경호처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현재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헌법 제23조제3항⁵⁴⁾)가 마련된 것과 달리 ‘비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나, 헌법상 기본권 보장규정(헌법 제10조 및 제11조⁵⁵⁾ 등)과 재산상 손실보상 규정(헌법 제23조제3항)을 근거로 당연히 보상하는 것이 법치국가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임.⁵⁶⁾

참고로, 국회경호처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개별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⁵⁷⁾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⁵⁸⁾

54)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55)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56)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2024), p.949-951.

5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손실보상) ① 처장은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등)에 손실보장 근거를 두고 있음.

[표-17] 손실보상 관련 유사 입법례

구 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감염병예방법
손실 발생 원인	적법한 직무집행	적법한 직무집행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	예방접종 또는 치료 의약품 투여
보상 범위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	손실	생명·신체
지급자	대통령경호처장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카. 벌칙(안 제21조)

제정안 제21조는 이 법상 소속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

[표-18]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정안 제21조제1항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법하게 무기를 휴대·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처장의 사전 허가 없이 국회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공표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임.

벌칙의 형량은 기본적으로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유사 범죄의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⁵⁹⁾

참고로, 제정안에 따른 벌칙의 법정형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59)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바195 결정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보다는 높은 수준임.

[표-19] 제정안의 벌칙과 유사 입법례 비교

구 분	직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위법한 무기사용 등	사전허가 없는 직무 공표
국회경호처 직원 (제정안)	5년 이하 징역·금고, 1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대통령경호처 직원 (대통령경호법)	(상동)			
경찰 (경찰관 직무집행법 ⁶⁰⁾)		1년 이하 징역·금고, 300만원 이하 벌금		
군사경찰 (군사경찰 직무법 ⁶¹⁾)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형 법 ⁶²⁾	2년 이하 징역·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60)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2)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타. 부칙

제정안은 부칙을 통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표-20]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안은 국회경호처라는 신규 기관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관 설립에 필요한 시간을 1년으로 전제하고 있음. 다만, 시행일에 앞서 기관 설립을 위해 일정한 준비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근거도 함께 부칙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칙 상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회경호처장에게 다른 국회소속기관의 장과 같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법」 제12조⁶³⁾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5

63) 「국회사무처법」 제12조(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